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1899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조 6,622억 8,0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7조 2,080억 8,100만원에 비하여 4,54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7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조 9,389억 1,8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661억 7,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510억 7,200만원
- 기후대응기금	791억 1,6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27억 5,400만원
- 성평등기금	240억 9,4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5억 9,400만원
- 사회복지기금	692억 1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84억 2,400만원
- 재난관리기금	9,298억 9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329억 9,500만원
- 대외협력기금	50억 4,500만원
- 도시재생기금	796억 8,700만원
- 관광진흥기금	66억 9,700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1억 7,200만원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억 3,100만원
- 고향사랑기금	2억 9,800만원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